

의안번호	2220179
의 퇴 인	소병훈의원
회 답 일	2026. 8. 20.
추계번호	26C373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등)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중 주거지·학자금 마련 용도의 대출금 등 생활 안정 및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를 공제하도록 규정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현행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사람을 의미	의무규정
2	안 제10조의2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특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여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보되,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및 생계 곤란 정도에 따라 단계적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0조의2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특례)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서 일부 부채를 공제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요건과 무관하게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할 경우, 신규 수급 가구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이 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의무자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¹⁾인 경우
 -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²⁾을 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
 -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로 함
 - 그 외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일 것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³⁾ 미만일 것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1)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2)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제3조(실제소득 차감금액)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 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5.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3)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제2조 (각주1 참고)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될 가구의 수와 수급액 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행 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을 획득하지 않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자료가 부재
 - 안 제8조제2항제1호는 공제할 부양의무자의 부채 수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안 제10조의2제2항은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특례에 대하여 적용할 생계급여 감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변동될 수급가구 수와 평균 수급액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